

韓國水道協會 支會 設置 規程

(制定 1994. 5.13)

第1條(定義) 定款 第4條의 規定에 依한 ‘支會’(이하 支會라한다)等 設置와 運營에 關한 事項은 이 規程에 依한다.

第2條(名稱, 位置) 支會의 名稱과 管轄地域등은 다음과 같다.

① 地域支會

1. 서울地域支會 … 서울特別市
2. 中部地域支會 … 仁川直轄市, 京畿道, 江原道
3. 忠淸地域支會 … 大田直轄市, 忠淸南・北道
4. 湖南地域支會 … 光州直轄市, 全羅南・北道, 濟州道
5. 嶺南地域支會 … 釜山直轄市, 大邱直轄市, 慶尙南・北道

② 分野別 管理支會

1. 貯水槽管理支會
2. 其他 必要時 構成

③ 支會의 必要에 따라 地域別 또는 區域別로 分會를 둘 수 있다.

第3條(地域支會) ① 地域支會 會員은 協會會員으로서 支會에 登錄한 者로 構成한다.

② 地域支會에 支會長과 副支會長, 總務幹事を 두워 支會를 運營하게한다.

③ 支會長은 地域會員中 支會總會에서 選出하여 協會會長의 承認을 받는다. 副支會長과 總務幹事는 支會長이 選出한다.

第4條(分野別 管理支會) ① 分野別 管理支會의 會員은 그 分野別 職種에 從事하는 協會 會員으로서 支會에 登錄한 者로 構成한다.

② 管理支會에 支會長, 副支會長, 總務幹事を 두며 支會長은 管理委員會 委員長이 兼任한다.

③ 支會長選出은 管理委員會 委員長 選任方法에 따라 選出하며 副支會長, 總務幹事는 支會長이 選出한다.

④ 管理委員會는 分野別 管理委員會 規程에 定한바에 따라 業務를 遂行하며 任員選出 事業計劃의 審議등 支會의 重要事項을 議決한다.

第5條(支會長) 支會長은 支會의 會務를 總括하며 支會를 代表한다. 支會長 有故時는 副支會長이 代行한다.

第6條(會議) 支會 總會는 年1回 開催하며 管理委員會 會議는 月例會로 하여 每月 開催 할 수 있다.

第7條(支會의 事業) ① 支會의 事業을 施行하고자 할때에는 事業計劃書를 協會會長에게 提出하여 事前承認을 얻어야 하며 事業實績은 每年度分을 다음年度 2月內에 提出한다.

② 分科別管理支會事業은 管理委員會에서 事業計劃書를 作成提出하여야 한다.

③ 事業計劃書에는 豫算 明細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第8條(支會의 運營) 支會運營에 관한 事項은 協會運營 및 處務規程에 의하고 支會會計業務는 協會 會計에 準하여 獨立處理한다.

第9條(細則) ① 第8條의 規定事項을 除外하고 特히 必要한 事項은 따로 細則으로 定할 수 있다.

② 細則은 協會와 支會가 各各 定할 수 있다. 다만 支會에서 定하는 細則은 協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附 則

이 規程은 協會理事會의 議決을 거친후 1994. 5. 13부터 效力이 發生한다.